

私有林 協業經營의 論理¹

金 鍾 官²

Logic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for the Private Forest¹

Jong Kwan Kim²

要 約

우리나라는 國土面積의 約 48%가 私有林이나 그 所有規模가 零細하여 自立經營이 어려운 實情에 있다. 零細山主의 個別經營을 自立經營으로 改善하기 위해서는 다른 個別經營들과 結合하여 經營規模를 擴大하는 協業經營이 要請되었다. 私有林 協業經營은 各者 山主가 確保하고 있는 林業生產要素들(林地, 勞動, 資本)을 一定한 秩序에 따라 相互結合하여 共同化하는 것이다. 林地의 共同經營을 위해서는 協業營林計劃이 必要하고 勞動의 共同化를 위해서는 職業的인 山林作業團이 育成되어야 하며 資本財의 協業化를 위해서는 林業生產用具들을 共同으로 確保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山主들의 協業經營이 理論的으로 零細山主들에게 有利하다고 하지만 農村과 都市에 分散되어 居住하고 있는 山主들이 自身들의 準備로서 協業經營體를 結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國家的 次元에서 協業經營體 育成을 위한 集約的인 弘報 및 指導事業이 要請되며 財政的인 支援도 隨伴되어야 한다.

ABSTRACT

Private forestland in Korea occupies about 48 percent of the total land area. But, the ownership size is too small to expect self-supporting management of forestowners. In order to improve individual management of the small-sized forest through the to the state of self-support, a cooperative forest management has been demanded, enlargement of the size of the management units by combining the different individual management units. The cooperative management of the private forest is to combine forestry production factors such as forestland, labor-power, and capitals according to the agreement. For the cooperative forest management, a proper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well-trained working-crew should be produced. In addition, forestry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and operated jointly. Though the cooperative forest management by owners is considered to be favorable theoretically, it is difficult for forestowners including many nonresidents to organize the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s without outside help. Therefore, intensive *publication* and extension programmes are required and a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should be followed.

Key words : private forest ; individual management ; cooperatives ; cooperative management .

¹ 接受 4月 19日 Received on April 19, 1988.

² 山林組合中央會 示範協業經營指導所 Training and Extension Service Center for Private Forest Management, National Federation of Forest Association, Yangsan, Kyong nam.

緒 論

우리나라의 私有林은 그 所有規模가 매우 零細하여²⁶⁾ 個別經營에 의한 自立經營이 어려우므로 經營實態가 不振한 立場에 있다²⁾. 國土面積의 約 48%를 차지하는 私有林에 대한 生産性 向上이라는 課題는 山主들의 所得增大뿐만 아니라 國土의 效率의 利用이라는 次元에서 반드시 實現되어야 하며 特히 木材資源의 自給自足과 公益의 機能에 대한 欲求의 充足을 위해서도 그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다. 私有林經營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우선 그 經營規模가 擴大되어야 하는데 政府에서는 1984년부터 經營規模 擴大의 한 方案으로 私有林 協業經營制度를 導入하여²⁷⁾ 擴大普及중에 있다. 農業經營에서는 오래전부터 農業協業化에 대한 研究가 많이 進展되었으나 私有林 協業經營에 대한 研究는 아직 未洽하다 할 수 있다. 本 研究는 우리나라 私有林 經營改善을 위한 林業協業經營의 論理性에 대해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林業의 社會的 環境이 急速히 變하고 있으므로 이에 對處하기 위한 林業의 社會的인 面에 대한 研究가 더욱 要望된다 할 수 있다.

研究方法 및 範圍

本 研究는 文獻에 依한 規範的 研究를 中心으로 하였으나 關係資料를 통한 實證的 方法도 併行하였다. 一般的인 協業經營에 對한 理論的 背景을 研究하고 이 理論에 따라 私有林 協業經營의 論理를 展開하였다. 本 研究는 私有林 協業經營의 可能性과 必要性 및 發展方向 等 經營規模 擴大에 대한 經營學的 方法論에 局限하였다. 協業經營 單位의 設立에 대한 技術的인 方法은 分野別로 더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

協業經營의 背景

1. 協業經營의 概念

1) 協同, 協力 및 協業

社會科學的 用語의 概念은 그 社會의 特性과 함께 理解되어야 한다. 協同과 協力 및 協業은 많은 境遇에 같은 뜻 -Cooperation- 으로 사용되고 있다. 協同이란 概念에 있어서 金¹⁹⁾은 두 사람 혹은 두 集團

이상의 社會 行爲者들이 어떤 共通된 目標을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高¹⁵⁾는 이에 대하여 共存할수 있는 目標에 대하여 行하여지는 對等的 相互補充的 努力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協力하는 各個人의 行動이 共通目標 達成을 위한 手段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委員會²¹⁾는 Cooperation을 “working together to the same end”라고 引用하여 協同이라고 하였으며 協同이란 마음과 힘을 같이 한다는 말로서 意思와 힘을 結合하여 어떤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였다. 반면에 金¹⁹⁾은 Cooperation을 協力이란 말로 사용하고 같은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協業의 概念은 生産過程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協同하여 行하는 生産形態라고 말할 수 있다. 文²⁰⁾은 協業이란 生産手段의 共同的使用으로 生産物에 移轉되는 不變資本의 價値를 相對的으로 減少시킴으로써 보다 合理的인 生産을 可能케 하고, 多數의 個別勞動을 結合시킴으로써 算術的 總和보다 더욱 많은 效果를 낼수 있는 社會的 勞動의 生産力을 發生케 하는 것이라 하였다. 위에서 引用한 內容들을 綜合해 보면 協同 및 協力は 社會學的인 概念에 基礎를 두고있다 할 수 있으나 協業은 經營經濟學的인 概念에 기초를 두고있다 할 수 있다.

2) 協同組合과 協業經營

協同組合이란 經濟的으로 弱한 消費者 또는 小生産者가 協同하는 힘으로서 그 經濟적 機能을 強化하고 利潤의 排除節減을 目標로 하는 相互扶助의 團體이므로 構成員들의 社會 經濟的 地位向上을 위한 人的 集團이라 할수 있다. 金¹⁸⁾은 協동조합은 經濟的弱者인 人間의 組織이며 資本의 組織은 아니라고 하였다. 金¹⁰⁾은 協동조합이란 相扶相助의 정신에 입각한 自律協同의 자유로운 組合의 結合에 의한 經營形態이며 組合結成의 主體는 經濟的 弱少者라고 하고 資本家의 結合은 協同組合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協동조합의 本質은 相互扶助의인 것이며 組合 그 自體의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소련의 Kolkhoz(集團農場)와 中共의 工業工作社와 같은 生産組合은 協同組合의 變形이라고 하였다. 生産組合에 대하여 金¹³⁾도 生産의 組合과 區分하여 生産組合은 勞動者나 小生産者가 勞動과 資本을 提供해 가지고 生産의 全過程을 共同으로 生産하는 組合이므로 生産者協同組合은 아니라고

고 하였다. 生産者協同組合은 各 組合員이 獨立的인 生産關係를 유지해 가면서 部分的 協同行爲로써 各 組合員의 경제활동을 助成하는 組織이지만 生産 組合은 그 조직의 範圍에 따라서 組合員은 獨立的인 生産者의 資格을 상실하고 全部分을 共同으로 하는 점이 있어서 區別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共產主義 國家의 協동조합 목적은 資本主義국가와 協同組合 目的과 正反對로서 經濟的 약자인 小農經營을 보호하고 維持시키고져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農場을 합쳐서 集團農場을 만듦으로서 農業을 社會化하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以上的 考察을 綜合해 보면 生産者 協同組合은 組合員이 所有하고 있는 獨立的인 生産關係를 계속 유지하면서 各者의 便益增進을 위하여 相扶相助하는 人的集團이라고 特定지을 수 있다. 그러나 協業經營은 個別經營의 經營構造 改善을 위한 對策에서 시작된다. 具¹⁷⁾는 個別經營이 自立經營으로서 發展하기 위해서는 內部的으로 經營構造를 개선해야 하므로 經營規模를 擴大해야 할 境遇가 많다고 하고 個別經營이 單獨의 힘으로 經營構造를 改善하고 또 필요한 經營規模를 擴大할 수 있는 能力이 있을 때에는 별 문제이나 個別經營이 零細하여 내부적 개선만으로는 도저히 自立經營을 營爲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外部의 經營集團과 協同하여 經營群의 思考方式 즉 協業經營이 필요하다 하였다. 陳⁷⁾도 零細한 個別經營의 經營規模 擴大를 위해서 共同化를

주장하고 協業經營의 概念으로 사용하였다. 協業經營에 있어서 經營規模의 擴大는 필연적으로 生産要素의 擴大를 隨伴하며 生産要素의 擴大를 위해서는 個別經營이 保有하고 있는 生産要素들을 合意된 秩序에 의하여 相互結合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協業經營이란 零細한 個別經營이 自體內部的 經營改善만으로는 根本的인 經營構造를 改善할수 없을 경우에 外部의으로 다른 個別經營들과 協同하여 生産要素들을 相互結合, 共同化하므로써 經營規模를 擴大하여¹²⁾ 合理的인 經營行爲를 營爲하고자 함을 말한다 할수 있다.

이렇게 볼때 協業經營은 零細한 小生産者들의 人的集團인 동시에 生産要素의 結合體 즉 經營資本의 集團化라 할 수 있다. 協同組合과 協業經營의 本質을 圖示해 보면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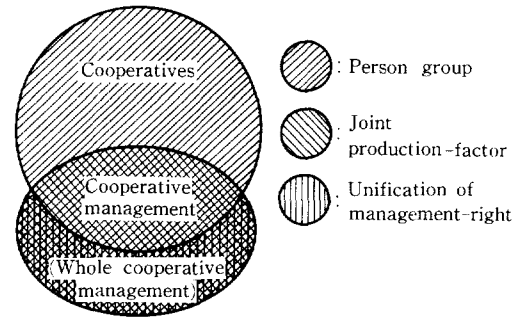


Fig. 2. Cooperatives and Cooperative Management

2. 農業協業經營

農業協業經營은 零細한 個別農家들이 그들 농가의 經營構造 改善을 위해서 다른 農家들과 協同하여 土地의 共同使用, 機械器具의 共同利用 및 共同作業, 高度의 技術導入 등 農業生産에 필요한 生産要素들의 共同利用을 통해서 經營規模를 擴大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概念은 바로 個別農家の 構造의 短點을 改善하기 위한 한 方便으로 各種 生産要素를 他 農家와 相互補完의으로 結合시킨다는 것이다. 具¹⁷⁾는 農業協業經營에 대하여 集團化에 의한 經營規模의 擴大, 能率 높은 기계의 導入, 고도의 技術導入 또는 勞動組織의 合理化라는 말로서 表現함으로서 生産要素의 結合을 意味하였다. 俞³²⁾는 農業協業經營에 대하여 多數 農民이 자기가 所有하는 土地와 資本의 一部 또는 全部를 提供하여 새로운 經營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여 生産要素의 結合 및 共同利用을 暗示하였다. 文²⁰⁾은 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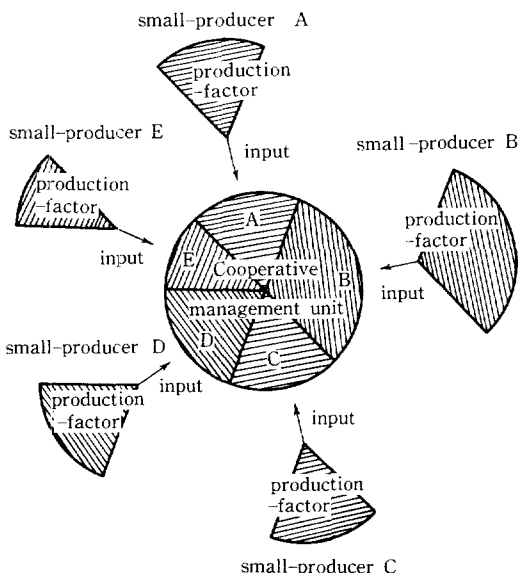


Fig. 1. Formation of Cooperative Management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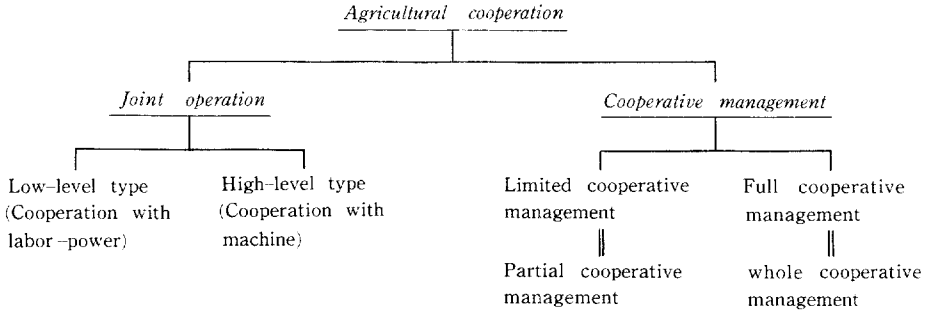


Fig. 3. Type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業이 生産手段의 共同的 使用이라하였고 陳⁷⁾은 經營規模 擴大를 위한 方便으로 1) 經營面積의 擴大와 集約化 2) 固定資本裝備의 擴充 3) 技術水準의 向上을 지적하고 個別經營의 共同化를 통한 生産要素의 結合을 意味하였다. 農業協業經營의 形態를 分類함에 있어서 文²⁰⁾은 共同作業과 共同經營으로 區分하였으며 共同作業은 勞動의 組織化와 社會的 勞動生産力의 發生을 가져오는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生産力의 發展을 통한 農業構造의 劃期的인 改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共同經營이 보다 效果的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共同經營을 農民의 生活까지도 包含하는 全面的 共同經營, 生産만을 中心으로 하는 全面共同經營, 部分的 共同經營, 生産組合 方式의 共同經營, 會社形式의 共同經營 等으로 區分하였다. 俞³²⁾도 文²⁰⁾과 같은 방식으로 分類하고 協業經營을 部分協業經營과 完全協業經營으로 區分하였다. 部分協業經營은 協業經營에 參加하는 사람들이 協業經營 以外的 個別經營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完全協業經營은 協業經營에 參加하는 사람들이 協業經營 以外的 個別經營을 가지고 있지않은 境遇라고 하고 그림3과 같이 圖示하였다.

具¹⁷⁾는 한 農家에 있어서 全部分을 共同으로 하지

않고 한 部分 한 部分에 대해서만 協業經營을 하는 것을 部分的 協業經營 또는 不完全協業經營이라고 하고 例를 들어서 養蠶이나 畜産部門의 協業經營, 果樹의 協業經營, 水稻의 協業經營 等を 提示하였다. 또한 한 農家의 生産部門 全部를 協同의으로 하는 것을 完全協業經營 또는 全部的 協業經營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이 形態의 協業經營은 多數農民이 自己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와 勞動과 資本을 提供하여 새로운 經營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陳⁷⁾도 協業經營의 類型을 俞³²⁾ 및 具¹⁷⁾와 같은 型으로 分類하였으나 協業經營을 共同經營으로 混用하였고 個別經營과 共同經營과의 關係를 그림4와 같이 圖示하였다.

農業의 個別經營이 經營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內部的 措置에는 限界가 있다. 內部的 改善으로서 問題解決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各 個別經營이 結合하는 外部的 改善措置를 취할수 밖에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나라의 零細한 農家經營構造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農業의 協業化가 불가피하다 할수 있다. 俞³²⁾는 農業協業經營의 가장 基本的인 課題는 農民의 組織化를 통하여 農業의 生産과 分配를 組織化하고 그리하여 農業의 生産力을 增進시키드로서 農民의 地位向上을 초래케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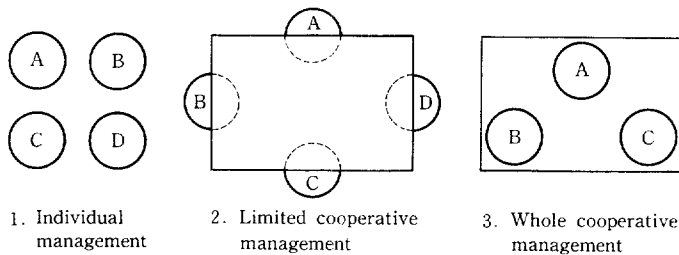


Fig. 4. Individual Management and Cooperative Management

본의인 課題의 達成을 가능케 하는 物質的 基礎는 土地의 統一의 經營을 기초로한 土地, 資本, 勞動의 合理的 利用에 있다 하였다. 또한 그는 農業의 協業化는 우리나라 農業의 前近代의인 諸矛盾, 國民經濟의 發展을 밑바닥에서 가로 막는 諸矛盾, 農民의 貧困을 深化시키는 諸矛盾을 窮極의으로 克服할 수 있는 制度라고 하였다. 그외에도 著書^{7,17,20)}는 韓國의 零細한 農業經營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方便으로 生産手段의 共同化로 經營規模를 擴大하는 農業協業化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뿐만아니라 文²⁰⁾은 協業經營은 原則的으로 私有財産制度를 否定하지 않은 範圍내에서 資本主義的 農業內部에 潛在하는 諸般의 矛盾을 是正하여 生産性을 最大限으로 높이 자는데 그 根本的 意義가 있다고 하였다. 共產主義 國家에서 意圖하는 集團農場과 資本主義 社會에서 指向하는 完全協業의 概念과는 根本的으로 큰 差異가 있다. 共產主義 國家에서의 集團農場은 個人農場을 統合하여 農業의 社會化를 위한 것이지만 協業經營은 零細한 個別經營의 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方案으로 各各의 個別經營이 所有한 生産手段(生産要素)을 共同으로 利用하여 生産性을 向上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文²⁰⁾은 資本主義的 大生産이 優勢한 支配를 하고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獨立的인 小生産은 언제나 不利한 立場에 서기 마련이며 이들은 大資本에 吸收당하거나 아니면 滅亡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事情하에서 獨立小生産者는 스스로의 利益과 生存을 保存하기 위한 相互結合이 要請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陳⁷⁾은 農業協業化의 段階의 接近方法을 그림5와 같이 圖示하고 協業經營의 發展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全面共同化(協業化)로 出發하는 것 보다는 共同作業이나 施設의 共同利用에서부터 部分

的共同經營을 거쳐 全面共同化의 段階를 밟아 가는 것이 安全하다고 하였다.

文²⁰⁾은 完全한 農業協業經營을 實現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農民 各者의 意識的 結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農民들에게 客觀的 情勢의 變化를 理解시키고 理論的인 눈(眼)을 뜨게하여 協同組織의 利點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하고 個人的 利益이나 幸福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더불어 더욱 增進될수 있다는 것을 實證的으로 提示함으로써 人間意識을 協同으로 轉換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積極的인 刺戟과 指導 및 示範이 베풀어져야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一定한 示範地域을 設定하여 實踐을 통한 可能性을 農民들에게 보다 널리 周知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하므로서 指導 및 示範事業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私有林 協業經營의 論理

1. 經營構造 改善과 協業經營

1) 經營規模 擴大方案

우리나라의 私有林은 그 所有規模가 매우 零細하여 100ha 以下로 所有된 山林의 面積은 全 私有林의 87%나 된다²⁶⁾. 일반적으로 主業的 林業經營을 하기 위해서는 그 所有規模가 100ha 以上이어야 한다고 한다²⁵⁾.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의 私有林은 大部分이 獨自的인 個別經營을 하기 어려운 零細한 規模로 所有되어 있고 이러한 林은 하나의 自立經營으로 成立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私有林 經營이 매우 沈滯하게 된다²⁶⁾. 이러한 實態하에서 私有林經營의 成立과 經營構造 改善을 위한 基礎作業은 먼저 林地의 經營規模를 擴大시키는 것이다^{4,30)}. 林地의 經營規模를 擴大시키는 方案으로서는 우선 3가지 方案을 考慮해 볼수 있다.

첫째는 林地의 相互交換이나 賣買方式에 의한 林地規模를 擴大하는 것,

둘째는 國家에서 國家財政에 의해 私有林을 買入하여 國有化 함으로서 林地規模를 擴大하는 方案이며,

셋째는 山主들이 서로 協議하여 各者가 所有한 林地를 共同利用토록 하여 林地經營規模를 擴大하는 方案이다(協業經營).

民主主義 社會에서 林地의 經營規模 擴大의 根本的인 目的은 經營規模를 擴大하므로서 林地生産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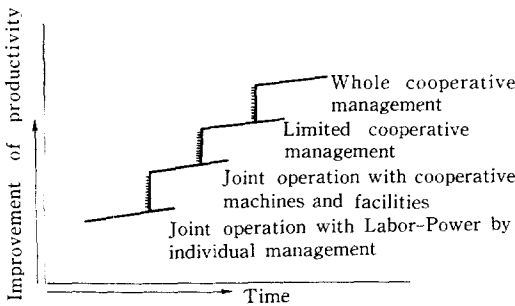


Fig. 5. Develop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on by Stages

Table 1. Ownership Scale of Private Forest*

Ownership Scale (ha)	Forest Owner			Forest Area		
	Number	Ratio (%)	CP	Area (ha)	Ratio (%)	CP
1>	1, 144, 296	59.9	.599	316, 741	6.7	.067
1-5	567, 766	29.7	.896	1, 322, 860	28.1	.348
5-30	183, 914	9.6	.992	1, 851, 676	39.3	.741
30-100	12, 669	0.7	.999	615, 047	13.1	.872
100<	2, 274	0.1	1.000	602, 030	12.8	1.000
Total	1, 910, 919	100	-	4, 708, 353	100	-

* Forestry Statistics, 1987. Forestry Administration

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는 산주의 소득증대에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볼때 위에서言及한 3가지 方案 중에서 첫째와 둘째 方案은 그 目的이 산주의 소득증대에 있는것이 아니고 國家的 次元에서 國土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한 土地所有의 集團化 方案이라 할수 있다. 왜냐하면 賣渡한 산주는 山林의 賣渡로서 산주의 資格을 喪失하게 되어 林業經營에 참가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가 지배하는 民主主義 社會에서 산주들의 所得증대를 위한 林地 經營規模 擴大方案으로서는 셋째 方案인 協業經營方式이 가장 合理的이라 할수 있다.

2) 私有林經營 協業化的 方向

協業經營은 各各의 個別經營이 經營에 필요한 生産要素를 相互結合하여 經營規模를 擴大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指摘하였다. 私有林 協業經營도 零細山主들이 各各가 所有하고 있는 林地, 勞動, 資本等 生産要素를³⁾ 約束된 秩序에 따라 相互結合시켜 共同經營을 하므로서 經營規模를 擴大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私有林 協業經營의 窮極의인 目的은 林業의 生産性を 높여 산주들의 所得을 增進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林業도 土地産業이므로 農業經營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林業經營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農業協業經營과 私有林 協業經營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게될 것이다. 私有林 協業經營이 農業協業經營과 樣相을 달리해야 할 理由를 考察해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理由는 農業은 農家에 의한 生業이 대부분이지만²²⁾ 平均 2.5ha의 林地를 所有한 零細山主는 林業이 生業과는 먼 거리에 있어서 林業依存度²⁶⁾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表2에서 보는 바와같이 많은 산주들이 不在山主이므로 이 不在山主의 自家勞動力을 林業勞動에 投入한다는 것은 거의 期待

하기 어려운 立場에 있다. 그러므로 私有林 協業經營은 農業協業經營에서 말하는 完全協業經營, 즉 한 農家가 다른 個別經營을 갖지않고 全 生産部分을 共同으로 하는(生活까지도 共同) 程度의 協業經營은 期待하기 어렵다. 私有林 協業經營에서는 한 산주가 自己의 經濟活動 중 林業經營部門의 全部를 다른 산주와 共同으로 經營하면 完全協業經營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둘째 理由는 林地는 農土에 비하여 規模가 廣闊하고 生産性 및 地利가 매우 多樣하여 一定基準에 따른 林地評價가 곤란하므로 林地의 所有權까지 共同結合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私有林 協業經營에서는 林地의 經營權만 結合되면 完全協業經營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de Lasson³⁾은 私有林 協業經營에 있어서 所有權까지 結合된 形態를 所有協業(Ownership cooperative)이라고 하여 따로 分類하였고 經營權만 結合되어 共同經營하는 것을 完全協業(Full cooperative)이라 하였다. de Lasson은 이외에 部分協業(Limited cooperative)을 추가하여 私有林 協業經營을 세가지 形態로 區分하였다.

私有林이 처해있는 現實의 立場을 고려해 본다면 산주들이 結合하여 自身들의 所得증대를 위한 協業經營單位의 造成은 農業協業經營에 비하여 훨씬 더 容易하게 結成될 것으로 推測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言及했듯이 農業은 많은 農家에 있어서 生計와 直結되는 生業이므로 이에 參加하는 農民은 매우 銳敏하며 까다로우실 밖에 없다. 그러나 林業에 있어서는 零細山主가 所有하고 있는 山林이 大部分 自身들의 生計에는 큰 影響을 주지 않으며 또한 많은 산주들이 不在山主로서 自己의 林業經營에 직접 참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立場에 있으므로 委託經營이나

共同經營이 불가피한 立場에 있기 때문이다.

2. 生産要素의 擴大方案

1) 林地 經營規模 擴大

林地的 經營規模를 擴大하는 方案으로는 두가지로 區分될수 있다. 하나는 協業經營에 參加한 全 山主들이 自身들이 所有한 林地的 所有權까지 하나로 統一시키는 方案이고 또 하나는 林地的 經營權만 하나로 結合시키는 方案이다. 林地的 所有權까지 結合하여 協業經營을 하는 것은 가장 理想的인 經營形態이지만 現實的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形態는 一般的인 企業經營 形態에서 말하는 株式會社와 같은 形態가 되므로 協業經營 組織으로서는 매우 單純하게 된다. 山主自身들이 所有한 自己의 山林(林地, 林木)을 現物로 出資하는 동시에 이에 相當하는 株式이나 持分을 配當받게 되고 權利와 義務의 行事는 配當받은 持分이나 株式의 數量에 따라 行事하게 된다. 林地的 經營權만 結合하여 協業經營을 하게 될때에는 經營權을 結合하는 制度的 裝置가 바로 協業營林計劃이라 할 수 있다. 協業經營이 아니고 個別經營일 때에는 各者 山主는 자기의 山林에 대한 營林計劃을 자기의 責任하에 編成하게 된다. 그러나 協業經營일 경우에는 經營權을 結束하는 手段으로서 協業經營에 參加한 모든 山主의 山林을 하나의 經營圈으로 看做하여 協業營林計劃을 編成해야 한다. 이 協業營林計劃에는 收穫 및 育林施業種도 물론 包含되어야 하지만 計劃期間동안에 設置해야 할 林道, 貯木場 및 기타 共同施設物도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協業經營에 參加하는 모든 山主는 既 編成된 營林計劃의 內容에 따라 施業을 하는 것에 同意하여야만이 協業經營 單位로서 成立이 可能하게 된다. 山主들

에 의해서 承認된 協業營林計劃에 따라 山林施業을 實施함에 있어서도 몇가지 形態로 區分하여 考察해 볼수 있다.

A型은 山主自身이 자신의 山林에 計劃된 施業을 자기 責任하에 個別的으로 實施하고 經理도 個別經理하는 경우이고,

B型은 山主가 자신의 山林에 대한 모든 施業을 協業體에 委任하고 協業體任員會에서는 山林作業團을 雇傭하여 共同으로 實施하나 그 經理는 個別(山主別) 經理하여 그 結果를 山主各者에게 通報허 증으로서 山主는 自身의 山林施業에서 發生한 費用을 辨償할 責任이 있으며 또한 자기의 山林에서 發生한 收益도 領收할 權利가 있다.

C型은 協業經營에 參加한 모든 山主가 적어도 經營에 있어서만은 所有境界의 概念을 無視하고 協業經營에 參加한 全 山林을 總合經營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各 山主는 자신의 山林에 대한 生産性を 評價받아서 一定한 持分을 配當받게 되고 해당된 持分率에 따라 經營의 結果에 대한 權利와 義務를 行事하게 된다. 이 形態는 所有權까지 結合하여 結成된 所有協業과 비슷하나 C型에서는 該當 林地的 所有權은 어디까지나 山主에게 있다.

이렇게 볼때 A型은 단지 協業營林計劃에 따라 山林施業이 實施됨으로 區域內 모든 施業이 體系的으로 實施되어 山林資源이 統一的, 計劃的으로 育成된다는데는 큰 意義가 있으나 林業經營 측면에서 共同作業이나 共同經營의 有利性으로 봐서는 거의 發展이 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다. 반면에 C型的 경우는 協業經營 즉 共同經營의 有利性은 많이 담겨져 있기는 하나 全體山主가 認定할 만한 生産性的의 算定基準을 定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形態의 經營權 結合은 쉽게 結成되기 어렵다. 그러나 B型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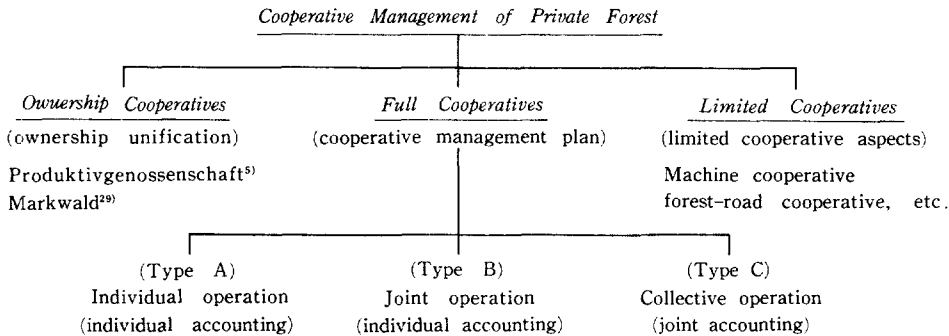


Fig. 6. Type of Cooperative Management for Private Forest

境遇는 協業經營의 有利性도 상당히 包含되어 있고 또 參加한 山主들도 共同經營으로 인한 自身들의 便益도 직접 느낄수 있으므로 쉽게 着手할수 있는 長點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內容들을 綜合하여 私有林 協業經營의 形態는 圖示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Kuhnen F¹⁶⁾도 協業營林計劃에서의 山林施業過程을 3段階로 分類하였다.

2) 林業勞動力의 共同化

山主들의 自家勞動力을 林業勞動에 投入한다는 것은 어려운 立場에 있다. 金¹¹⁾은 研究地域內 私有林的 61.9%가 不在山主에 의해서 所有되어 있다고 하였고 李¹⁹⁾는 53.6%가 不在山主에 의해서 所有되고 있다 하였다. 1984年 부터 全國 7個道에 設立된 協業體 地域²⁷⁾에는 全體 私有林的 68.9%가 不在山主에 의해서 所有되어 있으므로 私有林은 農民에 의해서 所有되어 있다는 過去의 觀念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山主가 自身的 山林이 位置한 地域과 먼 거리에 居住하는 不在山主이므로 이들의 自家勞動力을 자신들이 所有한 山林의 山林施業이나 協業體 地域內의 山林事業에 投入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뿐만아니라 在村山主들의 自家勞動力도 점차 高齡化되어가고 있고^{18),22)} 또 이 自家勞動力은 農業勞動에도 充分하지 못하므로 勞動對象이 限한 林業勞動⁹⁾에 까지 配分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現象으로 봐서 個別經營이나 協業經營을 막론하고 山主들의 自家勞動力에 의한 林業勞動力 供給은 거의 期待할 수 없고 不可避하게 雇傭勞動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雇傭勞動力 供給 역시 어려운 立場에 있다. 都市産業의 發達로 農村의 젊은 勞動力이 都市로 集中됨으로 農村人口는 점점 減少하는 趨勢^{18),22)}에 있다. 이러한

現狀하에서 適期에 良質의 林業勞動力을 供給하기 위해서는 一時的 雇傭勞動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作業의 效率化 및 供給의 安定性을 기하기 위하여 訓練된 林業勞動者를 養成하고 年中雇傭이 可能한 山林作業團으로 育成할 對策이 必要한 것이다. 이 作業團員들은 專門林業勞動者로서 所定の 訓練을 마친 者들로 構成되어야 하고 또 이들이 山林作業을 하나의 職業으로 하여 安全한 生活를 할수 있을 정도로 制度的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수 있을 것이다.

3) 林業 生産用具의 協業化

林業經營에 必要한 生産用具는 林道, 林業裝備(機械包含) 및 貯木場과 倉庫, 事務室 等이다. 이들은 거의 모두 零細한 山主들로서 獨自의 保有하기에는 많은 負擔이 되며 또 혼자 保有하더라도 使用頻度가 높지 않기 때문에 共同으로 保有함이 經濟的이다. 이 중에서 特히 林道는 設置費用이 많이 所要될 뿐만 아니라 一般道路와 連結되어야 그 役割이 可能하기 때문에 共同으로 設置함이 不可避하다. 效率的인 林道設置를 위해서는 協業營林計劃 編成時에 專門家에 의해서 協業經營 區域內의 理想的인 林道網圖를 製作하여 事業豫算의 範圍內에서 年次的으로 設置함이 妥當할 것이다. 林業用具의 共同利用上 發生하는 費用負擔에 있어서는 앞에서 分類한 協業經營 形態에서 所有協業과 完全協業 C型에서는 各者 山主가 分配된 持分率에 따라 負擔하게 됨으로 別문제 없으나 A型和 B型에서는 費用負擔에 대한 方針을 事前에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3. 私有林 協業經營單位의 設立

1) 協業經營 主體의 性格

農業協業化에 있어서 文²⁰⁾과 具¹⁷⁾는 協業經營의 主體로서 생각할수 있는 것이 會社形態, 農業法人形態 및 農業生産組合의 3가지로 區分하고 完全協業經營의 主體는 農業生産組合 形態로 推進함이 좋다고 하였다. 私有林 協業經營도 韓國農村의 普遍的 實情과 山主들의 意識水準에 맞게 發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農村社會에서는 오래전부터 契와 組合의 意識에 많이 익숙해 있고 林業社會에 있어서도 松契, 山林契 및 山林組合²⁸⁾ 等으로 契와 組合의 組織에 많이 친해져 있다. 그러므로 私有林 協業經營의 推進은 現存 山林組合 系統組織을 통한 主體의 結成과 또한 段階의 育成이 바람직할 것이다. 協業

Table 2. Residence of Forest Owner*

Area	resident owner		nonresident owner		Total (ha)
	ha	%	ha	%	
Yangpyong	1,854	35.9	3,307	64.1	5,161
Pyeongchang	1,536	33.5	3,053	66.5	4,589
Cheongwon	1,491	36.1	2,644	63.9	4,135
Kongju	1,867	37.4	3,127	62.6	4,994
Chinan	1,546	32.1	3,264	67.9	2,810
Changsong	824	21.1	3,085	78.9	3,909
Sangju	1,143	21.0	4,293	79.0	5,436
Total	10,261	31.1	22,773	68.9	33,034

* Extension Service Center for FMC in each province, 1986.

Stage I	Stage II	Stage III									
Forest Association without cooperative management	Forest Association with beginning cooperative management	Forest Associations with developed cooperative management									
1. inactive Forest Association	Forest Association tries to organize itself as cooperative	Cooperatives are fully developed and organized to plan, organize and execute forest management and related activities									
2. no management plan	management plan in preparation	self-determined forest management by cooperative within the agreed management plan									
3. government regulates activities	government regulates activities and assists in organization of cooperative and preparation of management plan	government assists by extension and financial support, and supervises that all activities are within management plan									
4. financial support as loan	financial support as loan	financial support as subsidy against 20% share of VFA in yield									
		<table border="1"> <thead> <tr> <th>Type A</th> <th>Type B</th> <th>Type C</th> </tr> </thead> <tbody> <tr> <td>Individual Forest Management on Cooperative Lines</td> <td>Individual Forest Management on Cooperative Lines With Separation of Ownership and Work Execution</td> <td>Joint Forest Management by Cooperative</td> </tr> <tr> <td>Individual or joint work execution</td> <td>Work execution by working crew (partly)</td> <td>Owner transfer management to cooperative, share in profit</td> </tr> </tbody> </table>	Type A	Type B	Type C	Individual Forest Management on Cooperative Lines	Individual Forest Management on Cooperative Lines With Separation of Ownership and Work Execution	Joint Forest Management by Cooperative	Individual or joint work execution	Work execution by working crew (partly)	Owner transfer management to cooperative, share in profit
Type A	Type B	Type C									
Individual Forest Management on Cooperative Lines	Individual Forest Management on Cooperative Lines With Separation of Ownership and Work Execution	Joint Forest Management by Cooperative									
Individual or joint work execution	Work execution by working crew (partly)	Owner transfer management to cooperative, share in profit									

Fig. 7. Development of Village Forest Associations in Three Stages

經營 主體의 設立은 自發的으로 加入하는 山主로만 하되 그 形態는 앞에서 分類한 完全協業經營 A型부터 着手하여 B型 및 C型으로 점차 段階的으로 發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採用될 形態의 決定은 構成員의 自律的 意思에 맡겨야 할 것이다. F. Kuhnen¹⁶⁾은 現在의 山林契를 協業經營體로 發展시키는 것을 提案하고 그 發展段階를 3段階로 나누어 그림 7과 같이 圖示하였다.

2) 運營方法

農業協業經營의 存續發展 條件으로서 陳⁷⁾은 4가지 原則을 제안하였다. 즉 ① 有利性的 原則 ② 公平의 原則 ③ 民主化의 原則 ④ 調整의 原則 이었다. 또한 具¹⁷⁾도 農業協業經營은 農民의 自由意思에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私有林 協業經營에 있어서도 그 根本目的이 山主들의 便益增進에 있으므로 그 運營方法은 農業協業經營과 類似할수 밖에 없으며 協業經營에 參加한 山主들의 自律的 意思에 의한 民主的 方式으로 運營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林業은 農業에 比하여 間接的 效果로서 公益的 機能이크므로^{8,24,31)} 이를 增進시키기 위한 國家的 手段으로 山主들에게 財政的 支援 및 技術的 指導가 併行되어야 할 것이나 協業經營의 運營이 地域社會 發展과

公共福利 增進에 根本的으로 違背될 때에는 法에 의하여 制裁가 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3) 單位의 規模

協業經營 單位는 屬地主義 原則에 의해서 一定地域內 林野를 所有한 山主는 會員으로 加入하게 될 것이다. 이 單位의 規模는 一定한 地域社會를 하나의 單位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수 있다^{1,23)}.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農村地域社會는 하나의 流域 혹은 小流域 單位로 發展되었고 또 그에따라 交通과 生活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山主들이 서로 쉽게 融和될수 있다. 具¹⁷⁾는 農業協業經營의 成功은 農民들이 同志의 結合度의 強弱에 달려 있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山主 協業經營의 發展을 위해서도 單位의 規模는 山主들이 서로 자주 相面하며 또 同志的, 共同體的 觀念이 높은 單位로 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 里洞單位의 境界는 보통 集水流域을 境界로 되어 있으므로 하나 또는 몇개의 里洞을 묶어서 (私有林 面積 1,000ha~2,000ha 內外) 하나의 協業經營體를 設立함이 妥當할 것으로 생각되나 木材收穫, 作業距離 및 技術指導 關係 등을 考慮하여 더 많은 研究가 필요한 것으로 思料된다.

引用文獻

1. 鄭址雄, 金庸煥, 金性洙, 1985. 農村地域 社會開發論. 韓國放送通信大學. 1-20.
2. 崔玟休. 1986. 民有林政策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5.
3. de Lasson Aksel. 1978.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s. KGFMP. 31-39.
4. Digy M. & Edwardson T.E. 1976. The Organisation of Forestry Cooperatives. The Plunkett Foundation Oxford. 231-233.
5. 黑田迪夫. 昭和 54. 農山村振興と 小規模林業經營. 日本林業 技術協會. 107-138.
6. 韓獨山林經營事業機構. 1980. 事業報告書. 山林廳. 15-16.
7. 陳興福. 1983. 最新農業經營學. 先進文化社. 272-281.
8. 岸根卓郎. 1979. 森林政策學. 養賢堂. 323-333.
9. 金樟洙, 李承潤. 1982. 林業經營經濟學. 一潮閣 236-262.
10. 金振穆. 1985. 經營學概論. 眞成社. 147-151.
11. 金鍾官. 1982. 私有林所有實態와 協業經營의 組織化에 對한 事例.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2.
12. 金鍾官. 1987. 私有林의 協業經營 發展方向. 45-60. 山林廳. 第11回 育林의 날 심포지움 發表主題.
13. 金峻憲, 尙戊達. 1984. 最新協同組合論. 博英社. 6-18.
14. 金璟東. 1986. 現代의 社會學. 博英社. 221.
15. 高永復. 1964. 社會心理學. 民潮社. 116.
16. Kuhnen F. 1980. Management of Private Forest Land on Cooperative Lines. GTZ. 16-23.
17. 具在書. 1987. 新農業經營學. 先進文化社. 375-377.
18. 李貞煥外 4人. 1986. 農業部門 長期人力需給에 關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9-17.
19. 李廣遠, 金聖昊. 1984. 韓國山林所有構造 및 利用實態分析. 韓國農村經濟研究院. 85-96.
20. 文炳鍊. 1973. 韓國의 村落. 進明文化社. 145-152.
21. 農專大教材編纂委員會. 1985. 農業協同組合. 學文社. 9.
22. 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86. 農協年鑑. 9-37.
23. 王仁權. 1977. 農村社會學. 富民文化社. 71-79.
24. 朴泰植. 1986. 森林政策學. 鄉文社. 31-33.
25. 朴泰植, 金樟洙外 6人. 1971. 林業經營學. 鄉文社. 22-29.
26. 山林廳. 1987. 林業統計要覽. 204, 331.
27. 山林廳. 1984. 私有林 協業經營 示範事業實行 指針. 19.
28. 山林組合中央會. 1987. 山林組合史. 3-156.
29. Stumpf Otto. 1978. der Garbenteich Markwald.
30. 成圭哲, 俞炳一. 1986. 山林協業經營體의 發展 方案에 關한 研究. 林業試驗場研究報告. 33 : 47-54.
31. Worrell Albert C. 1970. Principles of Forest Policy. McGraw-Hill. 11-21.
32. 俞仁浩. 1972. 韓國農業協業化의 研究. 韓國研究 院. 81-140.